

특 허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0허4990 등록무효(특)  
원 고 주식회사 A

공동대표이사 황운경, 정현모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동훈

피 고 B주식회사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명규, 유창순

변 론 종 결 2021. 7. 14.

판 결 선 고 2021.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0. 5. 29. 2018당217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 유

### 1. 기초 사실

####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 1) 발명의 명칭: 자동차 번호판 장착용 플레이트
-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6. 10. 25./ 2017. 3. 15./ 특허 제1718461호
- 3) 청구범위

【청구항 1】 몸체(10)의 전면에서 후면 외측으로 돌출되도록 함몰되어 내부에 소정의 공간(A)을 갖는 결합부(2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및 상기 결합부(20)의 후면에 형성되어 자동차 범퍼(B)의 지지프레임(F)에 결합하는 결합홈(21)이 사출성형에 의해 상기 몸체(10)와 일체로 형성되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결합홈(21)의 내측면에는 개구된 확인창(24)이 형성되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확인창(24)의 하부에는 결합공(23a)을 갖는 지지부(23)가 형성되는 것을(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 번호판 장착용 플레이트(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부(20)는, 일단부로 갈수록 상기 결합부(20)의 후측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경사면(20a)(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및 상기 경사면(20a)의 일단부에서 절곡되어 연장되고, 후단부에 상기 결합홈(21)이 형성되는 수평면(20b)(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 번호판

장착용 플레이트.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홈(21)의 입구에는 걸림편(22)이 형성되는 것을(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 번호판 장착용 플레이트.

【청구항 4】 (심사과정에서 삭제)

#### 4) 발명의 개요

##### ㉠ 기술분야 및 기술적 과제

[0001] 본 발명은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차에 간단하고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장착용 플레이트에 관한 것이다.

[0007] 종래 번호판 장착용 플레이트는 체결볼트 등의 체결수단을 통해 자동차 차체 또는 범퍼에 고정되는데, 이를 위해 자동차 차체 또는 범퍼에 체결볼트의 체결을 위한 별도의 체결공을 형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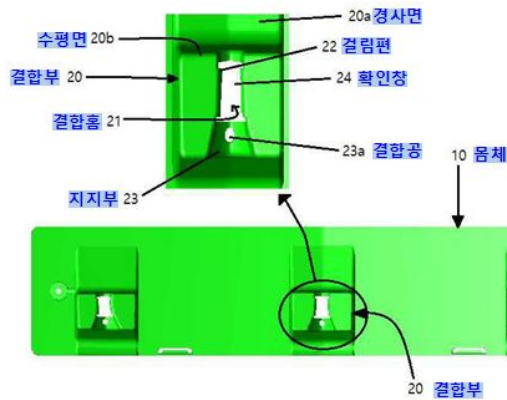
[0012] 본 발명은 자동차 번호판 장착용 플레이트를 자동차의 범퍼에 형성되는 지지프레임에 끼워 장착함으로써, 별도의 체결수단 없이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차 범퍼에 간단히 장착 또는 분리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장착용 플레이트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 ㉡ 과제 해결을 위한 발명의 구체적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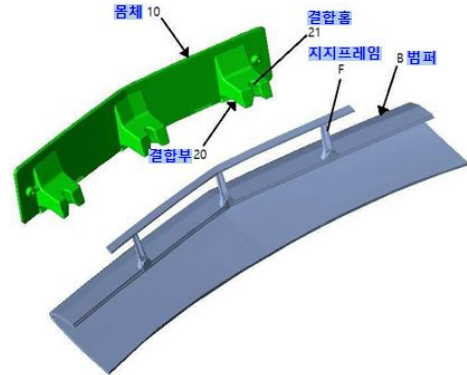
[0027] 본 발명의 번호판 장착용 플레이트는 자동차 번호판을 지지할 수 있도록 소정 면적을 갖는 판 형상의 몸체(10)가 구비된다.

[0029] 몸체(10)는 전면 테두리부에 자동차 번호판(미도시)의 장착을 위한 번호판 고정편(11)과 체결공이 형성되며, 내부에는 자동차의 범퍼(B)에 본 발명의 플레이트를 고정하는 결합부(20)가 적어도 하나 또는 다수 형성된다.

[도 4]



[도 6]



**[0030]** 결합부(20)는 상기 몸체(10)와 사출성형을 통해 일체로 형성되는 것으로, 상기 몸체(10)의 전면에서 후면 외측으로 함몰되어 소정 길이 돌출되고, 내부에 소정의 공간(A)이 형성되며, 후면에는 자동차 범퍼(B)의 지지프레임(F)에 대응하는 결합홈(21)이 형성된다.

**[0031]** 결합부(20)의 후면에는 지지프레임(F)이 용이하게 끼워질 수 있도록 입구가 탄성에 의해 벌어지고 상하측이 개방된 결합홈(21)을 형성하여, 지지프레임(F)과 결합홈(21)의 상호 체결에 의해 플레이트가 자동차의 범퍼(B)에 간단하면서도 견고하게 장착되며, 이로 인해 자동차 번호판이 자동차에 간단하게 고정 및/또는 분리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0034]** 결합부(20)의 후면에 형성되는 상기 결합홈(21)은 탄성에 의해 벌어질 수 있고, 입구에는 자동차 범퍼(B)의 지지프레임(F)이 상기 결합홈(21)에서 쉽게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걸림편(22)이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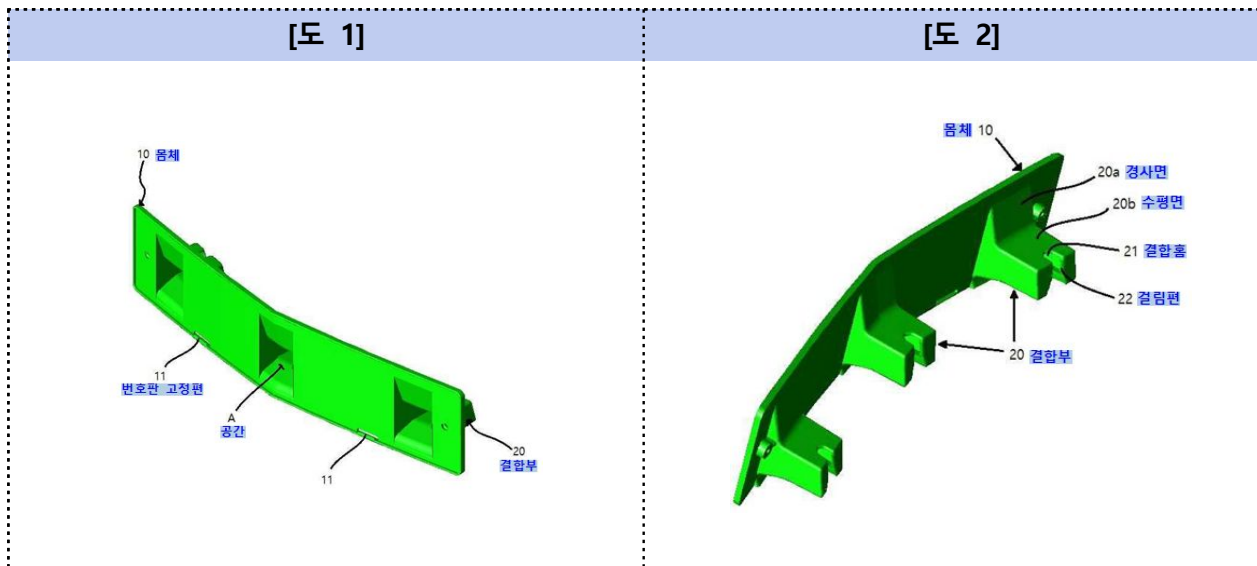
**[0035]** 결합홈(21)의 내측면에는 개구된 확인창(24)이 형성되어, 지지프레임(F)과 결합홈(21)의 체결 유무 및 상태를 확인창(24)을 통해 몸체(10)의 전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창(24)의 하부에는 중앙부에 결합공(23a)을 갖는 지지부(23)가 형성된다.

**[0036]** 결합공(23a)은 결합부(20)의 내부로 소정길이 돌출되고, 결합공(23a) 전방의 결합부(20)

하면에는 결합공(23a)에 체결되는 체결볼트(미도시)의 체결을 용이하게 하는 요홈이 형성된다.

**[0037]** 결합홈(21)에 자동차 범퍼(B)의 지지프레임(F)이 끼워져 고정되고, 몸체(10)의 전방에서 확인창(24)을 통해 지지프레임(F)과 결합홈(21)의 체결 유무 및 체결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지부(23)에 형성되는 결합공(23a)에 지지프레임(F)과의 결속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결볼트(미도시)를 체결함으로써, 본 발명의 자동차 번호판 장착용 플레이트를 자동차 범퍼(B)에 더욱 견고하게 장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0038]** 결합부(20)의 상면 및/또는 하면은 결합부(20)의 후측 방향으로 소정각으로 기울어진 세로방향의 경사면(20a)과; 경사면(20a)의 일단부에서 절곡되어 연장되고, 후단부에 결합홈(21)의 상단부 및/또는 하단부가 형성되는 수평면(20b)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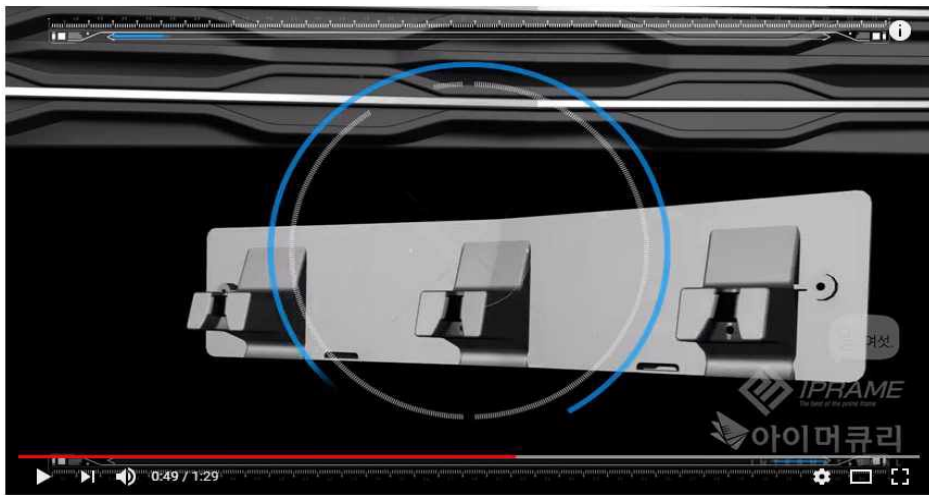


**[0046]** 본 발명에 따른 자동차 번호판 장착용 플레이트는 별도의 체결수단 없이도 자동차에 간단 용이하게 장착 또는 분리할 수 있으며, 플레이트의 몸체와 체결부가 사출성형에 의해 일체로 제작됨으로써 제조공정이 간단하고, 제품의 원가를 줄일 수 있는 현저한 효과가 있다.

##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을 제1호증)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직원 E이 2016. 8. 16. 유튜브(<https://www.youtube.com/F>)에 게시한 'M 2016년 북미형 그릴 ^^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로 M 재탄생!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과 그 캡처 화면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선행발명 2(을 제2호증)

2016. 8. 24. 네이버 블로그(<https://m.blog.naver.com/G>)에 게재된 '[자동차] 우리 손으로 직접! 올뉴 M 북미형그릴/올뉴 M 북미형 그릴 셀프 장착'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게시물로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3) 선행발명 3(을 제3호증)

2016. 8. 23. 네이버 블로그(<https://H>)에 게재된 '올뉴M 붙착형 북미형그릴 시공 시작 하였습니다 ^^'라는 제목의 인터넷 게시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선행발명 4(을 제4호증)

2016. 8. 6.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l>)에 게재된 'J샷, 올뉴M 북미형그릴 장착'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게시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9. 1. 13.

네이버 블로그 :: 글 내용 Print

양산고릴라샵, 올뉴말리부 북미형그릴 장착 각종 열아디 튜닝작업

2016. 8. 6. 20:54

<https://blog.naver.com/arumily/220781319108>

북미그릴 공구제품이 샘플로 도착 했습니다  
부경부지역장 지누님께서 품소직접 저취함을 방문해주셔서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바쁜시간 중에도 방문주셔서 진심 감사드립니다^^



우선 클럽말리부 클럽장님이 개발해주신  
북미그릴 공구품이 오늘 도착 하였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장착도 용이해서 개발하실때 나름 세심하게 배려하신  
모습이 여실이 나타납니다.

8월8일(월)부터 클럽말리부 공구란에서 직접 공급 받을수 있을것로 봅니다.  
가격이 좋고 범퍼 탈착형이 아니라 각지역 프로샵지점에서 저비용으로 장착할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릴 장착후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 다.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8. 7. 12.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출원 전 공지된 것으로 신규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특허

발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2018당2173)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2020. 5. 29. '이 사건 제1 내지 제3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2와 동일하고, 선행발명 1, 2가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의사에 반한 공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라는 취지로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 취지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가. 원고**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선행발명들에 의해 출원 전에 공지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나. 피고**

D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단독 발명자이거나 최소한 원고와 공동발명자이므로 D에 의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 공지는 발명자의 의사에 반한 공지가 아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D의 선행발명들에 대한 공지를 용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자의 의사에 반한 공지가 아니어서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지 않다.

##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들의 동일성**

선행발명 1 내지 4는 모두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생산한 제품으로서, 선행발명 1이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3항 각 특허발명의 각 구성 및 그 유기적 결합 관계를 모두 그대로 가지고 있음은 아래 구성대비표 기재와 같고, 선행발명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

구성 요소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1
1	몸체(10)의 전면에서 후면 외측으로 돌출되도록 함몰되어 내부에 소정의 공간(A)을 갖는 결합부(20)	몸체의 전면에서 후면으로 돌출되도록 함몰되어 소정의 공간을 갖는 결합부
2	결합부(20)의 후면에 형성되어 자동차 범퍼(B)의 지지프레임(F)에 결합하는 결합홈(21)이 사출성형에 의해 상기 몸체(10)와 일체로 형성	결합부 후면에 형성되어 자동차 범퍼의 지지프레임에 결합하는 결합홈이 사출성형에 의해 몸체와 일체로 형성
3	상기 결합홈 (21)의 내측면에는 개구된 확인창(24)이 형성	결합홈의 내측면에는 개구된 확인창이 형성
4	확인창(24)의 하부에는 결합공(23a)을 갖는 지지부(23)가 형성	확인창의 하부에는 결합공을 갖는 지지부가 형성

2)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

구성 요소	이 사건 제2항 발명	선행발명 1
5	결합부(20)는, 일단부로 갈수록 상기 결합부(20)의 후측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경사	결합부는 일단부로 갈수록 결합부의 후측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경사면

	면(20a)	
6	상기 경사면(20a)의 일단부에서 절곡되어 연장되고, 후단부에 상기 결합홈(21)이 형성되는 수평면(20b)을 포함	경사면 일단부에서 절곡되어 연장되고, 후단부에 결합홈이 형성되는 수평면

3)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

구성 요소	이 사건 제3항 발명	선행발명 1
7	결합홈(21)의 입구에는 걸림편(22)이 형성	결합홈 입구에 형성된 걸림편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 공지 여부**

1) 관련 법리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123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5, 10, 22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강효선의 일부 증언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6. 6. 8. D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한 M 차량의 번호판 장착용 플레이트 및 전면 그릴에 대한 각각의 금형을 제작하여 2016. 7. 30.까지 D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위 금형 및 계약을 각 '이 사건 금형',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서 제15조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하 '비밀유지약정'이라 한다)을 담고 있다.

제15조 [지식재산권] 개발한 금형과 금형에 의해 생산된 제품에 대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개발자인 '을'(원고)에게 있고, '갑'(D)은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며, '을'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출원을 마칠 때까지 '갑'은 개발한 금형과 금형에 의해 생산된 제품에 대한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③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에 따라 제작하는 제품의 목형(Mockup, 사출제품의 설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금형을 제작하기 전에 사출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이용하여 공작기계로 외부에서 절삭하면서 가공하여 제작하는 모형) 1개 내지 2개를 공급하였다.

④ D는 100개의 대리점 및 15개의 총판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위와 같은 목형을 받아본 후, 금형에 따라 제작될 제품을 대리점 등에 제공하여 장착점들의 반응(피드백)을 보기 위해 원고를 비롯한 4개 업체로부터 약 1,000개 샘플 제품의 사출 견적을 받았다가, 결국 원고에게 금형에 따라 제작될 제품의 사출도 맡기기로 하였다.

⑤ 이에 원고는 2016. 7. 중순경 D에게 이 사건 금형으로 제작한 번호판 장착용 플레이트(이하 '이 사건 시제품'이라 한다) 700개를 '검수용' 명목으로 제공하였고, 당시 M 차량용 전면그릴도 그와 유사한 수량을 공급하였다.

⑥ D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시제품을 직원 및 그 지인들의 차량에 부착해 봄과 동시에 '클럽 M(CLUB MALIBY)'라는 K 자동차 관련 클럽의 장으로서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L의 공동구매 요청에 응하여 그에게 판매하였다.

⑦ L은 D로부터 매수한 제품을 클럽 회원들에게 판매하여 선행발명 2, 3, 4와 같이 네이버 블로그에 그 장착 모습이 게시되었다.

⑧ 이 사건 특허발명이 특허등록이 된 이후 원고는 D에게 금형에 의해 생산한 제품을 본격 납품하였는데, 그 개당 단가는 60,000원대 초반대로 정하였다.

###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선행발명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D 직원이나 그 지인 및 '클럽 M' 회원들에게 제공되어 장착되고 나아가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출원 전에 그 발명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공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 4) 소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출원 전 공지되었으므로, 특허법 제3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

## 다.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것인지 여부

### 1) 관련 법리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2호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내용이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누설되거나

나 타인이 이를 도용함으로써 일반에게 공표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신규성을 주장하는 자는 위와 같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 또는 도용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5후15 판결 등 참조).

##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 당시에 비밀유지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시제품 700개의 제공 당시에 적어도 이 사건 시제품들이 D의 대리점, 총판 등을 통해 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해 비밀유지약정의 당사자인 D 이외의 자, 즉 직원들, 대리점, 총판, 자동차 관련 클럽들에 배포, 장착될 것임을 알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제품 700개 중 일부인 선행발명들의 공지가 원고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특허발명의 신규성을 상실하게 하는 '공지'는 반드시 유상판매에 의할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D에 700개의 시제품을 제공할 당시 시장에 '판매'하지는 말 것을 요청하였고 그 구체적 판매 시점이나 유통 경로에 대해서는 원고가 D로부터 통지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D가 원고가 용인한 바에 따라 그 시제품을 배포하여 공지된 이상, 위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금형제작 계약서에 비밀유지약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당초 계약의 내용이 원고가 D에게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 비밀유지약정이 출원 전 제품의 판매금지 약정까지 포함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시제품 700개 제공 당시 그 판매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도 아니 하였다.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제품은 차량 외부에 장착하는 것이고 그 구조도 비교적 단조로워 차량에 장착된 외관만으로도 그 발명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공개에 더욱 특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D에게 700개의 시제품을 납품하면서 비밀유지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직후 출원 사실을 D에 고지하지도 않았다.

③ D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형 완성 전 '목형'을 받고 목형에 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금형 완성 후 제품 사출 목적으로 여러 업체를 접촉하다 결국 원고에게 사출을 맡기기로 하였고, 특히 일반제품의 사출과 달리 이 사건 시제품과 같은 경우 통상 대리점들에 장착을 해 본 후 그 반응을 보고 본격적인 제품 양산에 들어가는 데 이 사건 시제품 납품도 그와 같이 대리점 등의 반응을 보기 위해 D가 원고에게 700개의 적지 않은 수량의 시제품 납품을 요청하여 받았다.

④ 원고는 여러 대리점과 총판점을 운영하는 D와 기존 거래관계가 있었고, 위 700개의 시제품을 D에 납품하면서 그와 함께 교환장착이 필요한 그릴도 거의 같은 수량 공급하였으며, 원고가 제공한 수량 및 총 납품단가 자체가 단순히 제품이 금형에 의해 잘 사출되었는지 확인할 목적에 필요한 수량을 훨씬 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도 700개의 시제품이 단순 '금형검수용' 목적만이 아니라 자동차에 장착되어 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것임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⑤ D는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에서 납품기한의 준수를 특히 강조하였고, 그 후 15일을 금형 검수기간으로 예정해 두었으며, 이 사건 시제품을 원고로부터 받은 후 즉시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하고 자동차 동호회를 통한 판매에 돌입하는 등 이 사건 금형에 의해 생산할 제품의 출시, 홍보, 판매를 서둘러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시제품



이 자동차의 특정 모델에 한하여 사용되는 제품이고 원고가 본 제품의 사출계약까지 체결한 점에 비추어 원고로서도 이 사건 시제품의 홍보나 시장 출시에 대해 D에게 적극 협조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지가 원고의 의사에 반한 공지로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와 같이 선행발명들에 의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지가 발명자의 의사에 반한 공지라고 볼 수 없어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는 이상, 원고가 아닌 D가 발명자에 해당하여 위 공지가 발명자의 의사에 반한 공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 한다).

##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우

                 판사      이해진

판사 김영기